

■ 김포 북변 우미 린 파크리브는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제1항 별표 3에 의거 **2024년 11월 28일부터** **분양권 전매가 가능함**에 따라, **분양권 전매 절차 및 관련 서류**를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**중도금 1회차 미납자의 경우** **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며 반드시 중도금 1회차 납부 확인 후 전매 접수가 가능합니다.**

| 분양권 전매 일정 |

구분	내용
사전예약 접수방법	대표번호(031-996-7479)를 통한 유선예약만 가능
전매 접수일정	■ 매월 17일 ※ 2025년 2월은 14일(금) 접수하며, 조합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예약시 확인바랍니다.
장소	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※ 주소 : 김포시 북변1로 20-6(북변동714)
유의사항	※ 중도금 미납세대 및 사전방문 미예약세대는 전매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점심시간(12:00 ~ 13:00)은 전매업무가 불가합니다. ※ 방문예약 시간 외 방문시 전매업무가 불가하오니 방문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분양권 전매 절차 |

① 분양권 전매 방문예약 및 매매(중여)계약	- 대표번호 유선 사전 방문예약 진행 -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(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증여계약서에 검인 필수)			
②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발급 및 증여계약서 검인	-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방문(필요서류 : 공급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계약서 원본, 신분증 등) ※ 부동산 거래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및 필증 발급 가능			
③ 중도금 대출 승계 채무인수 동의서 발급	1. 중도금 대출 신청세대 : 각 동별 수협은행 취급지점 방문 후 중도금 대출 승계 진행 및 대출승계확인서 발급 2. 중도금 대출 미신청세대 : 중도금 회차별 입금증 3. 중도금 대출 상환세대 : 대출상환 확인서, 대출금 상환영수증			
해당동	101동	102동	103동	104, 105동
취급지점	독섬역지점	장안평지점	신사역지점	김포한강지점
전화번호	02-498-6211~4	02-2243-0277~9	02-3448-4667~70	031-996-8734~7
해당동	106, 107동	108, 109동	110, 111동	112동
취급지점	일원역지점	압구정금융센터	역삼금융센터	학동역금융센터
전화번호	02-557-0634~5	02-3446-2636~8	02-2051-8310~3	02-3443-3905~8
④ 명의변경 진행	- 방문예약 일시 견본주택 방문 및 전매 진행 ※ 매도자 본인 직접방문(※ 대리인 방문시 분양권 전매 불가)			
※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	- 양도인 주소지(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)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진행			

| 분양권 전매 필요서류 |

구분	매도인	매수인
필요 서류	- 매도용 인감증명서 2부(본인 발급분,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) - 인감도장 - 주민등록표등본 2부 - 신분증 사본	- 인감증명서 2부(본인 발급분) - 인감도장 - 주민등록표등본 2부 - 신분증 사본
	- 공급계약서, 발코니 및 추가선택품목계약서 원본 - 부동산(분양권) 매매 계약서 / 증여계약서(증여시/김포시청 검인필수) -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및 정부수입인지(15만원 / 증여시 불필요) - 중도금 대출 채무인수 동의서 ※ 중도금 대출 채무인수 시 매도인, 매수자가 은행에 직접 문의 후 필요 서류 첨부 대출 승계 진행 必	

※ 상기 필요서류 중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및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에 한합니다.

※ 매수인의 대리인 방문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2부(본인발급분),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분양권 전매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명의변경 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상호 협의하에 인지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